|  |  |  |
| --- | --- | --- |
| **상무부 국경 간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상자함[2011]제889호새로운 형태의 발전에 적응하고 편리한 투자를 촉진하며 외자이용 업무를 더욱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상투자법률 법규 등 유관 규정에 따라,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와 관련한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본 통지에서 지칭하는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는 외국투자자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경외 인민폐로 법에 의거하여 중국에 와서 직접투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본 통지에서 지칭하는 경외 인민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 외국투자자가 국경간 무역의 인민폐 결산을 통해 취득한 인민폐, 중국 경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취득하고 경외로 송금한 인민폐 이윤과 지분양도, 감자, 청산, 투자사전회수로 취득한 인민폐(2) 외국투자자가 경외에서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인민폐로, 경외에서 인민폐 채권 및 주식 등을 발행하여 취득한 인민폐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음3.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 및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는 응당 외상투자 법률법규 및 유관 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의 외상투자 산업정책, 외자의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 심사 및 반독점 심사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는 중국 경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가증권 및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데 사용될 수 없고, 위탁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현행 외상투자 심의비준 관리규정과 권한에 따라 국경간 인민폐 직접 투자를 심의비준한다. 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외상투자 법률법규 및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문건을 제출하고, 또한 상무주관부문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인민폐 자금 출처증명 또는 설명문건(2) 자금용도설명(3)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 현황표>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 과정에서 기존 출자 화폐종류를 외화에서 인민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무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술한 자료뿐만 아니라 동사회 등 회사 최고권력기구의 결의문건, 수정 이후의 계약서/정관(또는 수정협의서)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6. 지방 상무주관부문은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 현황표>를 외상투자 심의비준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음상황에 해당하는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는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 현황표>에 서명날인한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의비준을 받는다. (1) 인민폐 출자금액이 3억 위안 또는 3억 위안 이상에 달하는 경우(2) 융자담보, 융자리스, 소액신용대출, 경매 등 업종(3) 외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 및 지분권투자기업(4) 시멘트, 강철, 전해알루미늄, 조선 등 국가가 거시적으로 통제하는 업종.7. 상무부는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보고하여 발송한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 현황표>를 수령한 후 5일 영업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거나 심사확인 의견을 제시한다. 심사에 통과하는 경우, 지방 상무주관부문이 회답문건을 발급하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8.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회답문건에 “경외 인민폐 출자”의 표현, 출자금액 및 본 통지 제4조의 요구사항을 기입하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비고란에 “경외 인민폐 출자” 표현과 인민폐 출자금액을 추가로 기입해야 한다. 9. 각 급 상무주관부문은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 회답문건을 적시에 동급 인민은행, 세관, 세무, 공상 및 외환 등 부문에 참조 처리하여 발송한다. 10.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 부동산업은 현행 외상투자 부동산 심의비준 및 비안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비안에 통과하면 상무부 홈페이지([www.mofcom.gov.cn](http://www.mofcom.gov.cn) 외자사 “결과공개” 항목)에 공시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상무부 홈페이지의 공시정보(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조회확인), 상무주관부문의 회답문건,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여 유관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11. 외국투자자가 합법적으로 획득한 경외 인민폐를 사용하여 경내 상장회사의 directional issue 및 주식 협의양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 관리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무부에 유관 심의비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2.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후 경외로 송금하지 않은 인민폐 이윤과 지분양도, 감자, 청산, 투자사전회수한 인민폐 소득으로 직접투자를 전개하는 경우에도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3.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외상투자 연합연도검사를 진행할 때,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와 대해 본 통지 제4조를 대조하여 검사해야 한다. 14. 대만, 홍콩 및 마카오 지역의 투자자가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본 통지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15.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의 업무통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별도로 통지한다. 16. 본 통지는 하달 발송일로부터 실행한다. 이전에 상무부가 발표한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에 관한 규정이 본 통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경간 인민폐 직접투자의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본 통지가 요구하는 사항은 해당 지역의 각급 상무주관부문에 잘 전달하고 심의비준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주길 바란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상무부(외자사)와 연락하여 유관 현황을 통보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국경 간 인민폐 직접투자 현황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1년 10월 12일 |  | **商务部关于跨境人民币直接投资有关问题通知**商资函[2011]第889号　　为适应新形势发展，促进投资便利化，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根据外商投资法律法规等有关规定，现就跨境人民币直接投资的有关事宜通知如下：　　一、本通知所称“跨境人民币直接投资”是指外国投资者以合法获得的境外人民币依法来华开展直接投资活动。　　二、本通知所称境外人民币是指：　　（一）外国投资者通过跨境贸易人民币结算取得的人民币，以及从中国境内依法取得并汇出境外的人民币利润和转股、减资、清算、先行回收投资所得人民币；　　（二）外国投资者在境外通过合法渠道取得的人民币，包括但不限于通过境外发行人民币债券、发行人民币股票等方式取得的人民币。　　三、跨境人民币直接投资及所投资外商投资企业的再投资应当符合外商投资法律法规及有关规定的要求，遵守国家外商投资产业政策、外资并购安全审查、反垄断审查的有关规定。　　四、跨境人民币直接投资在中国境内不得直接或间接用于投资有价证券和金融衍生品（除本通知第十一条规定外），以及用于委托贷款。　　五、各级商务主管部门按照现行外商投资审批管理规定和权限审批跨境人民币直接投资。投资者或外商投资企业除按照外商投资法律法规及有关规定提交相关文件外，还应向商务主管部门提交下列文件：　　（一）人民币资金来源证明或说明文件；　　（二）资金用途说明；　　（三）《跨境人民币直接投资情况表》。跨境人民币直接投资中将原出资币种由外币变更为人民币的，需同时报请商务主管部门批准，除上述材料外，还需提供董事会等企业最高权力机构的决议、修改后的合同/章程（或修改协议）。　　六、地方商务主管部门应将《跨境人民币直接投资情况表》录入外商投资审批管理系统，对属于以下情形的跨境人民币直接投资，由省级商务主管部门在《跨境人民币直接投资情况表》上签章后，报商务部审核。　　（一）人民币出资金额达3亿或3亿元人民币以上；　　（二）融资担保、融资租赁、小额信贷、拍卖等行业；　　（三）外商投资性公司、外商投资创业投资或股权投资企业；　　（四）水泥、钢铁、电解铝、造船等国家宏观调控行业。　　七、商务部收到省级商务主管部门报送的《跨境人民币直接投资情况表》后，在5个工作日内完成审核或提出审核意见。通过审核的，地方商务主管部门可出具批复，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八、各级商务主管部门在跨境人民币直接投资批复中应写明“境外人民币出资”字样、出资金额及本通知第四条要求，在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备注栏中应加注“境外人民币出资”字样及人民币出资金额。　　九、各级商务主管部门应将跨境人民币直接投资批复文件及时抄送同级人民银行、海关、税务、工商、外汇等部门。　　十、跨境人民币直接投资房地产业应按照现行外商投资房地产审批、备案管理规定执行。通过备案的，将在商务部网站（www.mofcom.gov.cn外资司子站“结果公开”栏目）上予以公示，外商投资企业凭商务部网站公示信息（登录网站查看）、商务主管部门批复文件、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按照有关管理规定办理相关手续。　　十一、外国投资者使用合法获得的境外人民币参与境内上市公司定向发行、协议转让股票的，应按照《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的要求向商务部办理相关审批手续。　　十二、外国投资者以从中国境内所投资的外商投资企业获取但未汇出境外的人民币利润以及转股、减资、清算、先行回收投资所得人民币开展直接投资的，仍按照有关规定执行。　　十三、各级商务主管部门在外商投资联合年检时，对于跨境人民币直接投资的，应对照本通知第四条予以检查。　　十四、台湾、香港和澳门地区的投资者开展跨境人民币直接投资的，参照本通知办理。　　十五、关于跨境人民币直接投资的业务统计要求将另行通知。　　十六、本通知自下发之日起实施，此前商务部关于跨境人民币直接投资的规定与本通知不符的，以本通知为准。　　为推动跨境人民币直接投资规范健康发展，请各省级商务主管部门将本通知要求传达至本地区各级商务主管部门，并加强审批监管工作。在执行中如发现问题，请及时与商务部（外资司）联系，通报有关情况。　　附件：跨境人民币直接投资情况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二〇一一年十月十二日 |